
펀드투자권유준칙

소관팀 : 투자캠프(1 차)

2023. 04. 24. 제정

2023. 12. 08. 개정

제 1 조 (목적) 이 펀드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 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카카오뱅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투자권유 희망 여부 확인) 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안내)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투자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별표 1]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2]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여 제 6 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 8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권유 절차) ① [별표 4]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펀드 기준" 및 [별표 5] "펀드 투자위험 지도"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 ③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①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9 조 및 [별표 6] "고령투자자 펀드판매 보호 기준"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만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저장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저장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 174 조, 제 176 조 또는 제 178 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11. 금소법 제 17 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12. 은행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 점검 및 보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설명 의무) ①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펀드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 123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펀드를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 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④ 금소법 제 19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5 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펀드의 위험도를 [별표 3]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과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 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펀드의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서류의 교부) ①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에 따른 계약서류를 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 17 조 (청약의 철회) ①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

③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⑤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18 조 (위법 계약의 해지) ① 금소법 제 17 조 (적합성원칙) 제 3 항, 제 18 조 (적정성원칙) 제 2 항, 제 19 조 (설명 의무) 제 1 항·제 3 항, 제 20 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 1 항 또는 제 21 조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 9 조 제 22 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 1 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 47 조 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 조 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9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20 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은행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펀드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펀드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펀드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1 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판매 관련 자료는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는 10 년 또는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08.>

부칙 (2023. 04. 24.)

제 1 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3. 04. 24. 부터 시행한다. 단, 금융투자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08.)

제 1 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3. 12. 08.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정 2023. 12. 08.>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문	답변
연령	(고객정보 자동 입력)	29 세 이하
		30 세 이상 39 세 이하
		40 세 이상 49 세 이하
		50 세 이상 59 세 이하
		60 세 이상 64 세 이하
		65 세 이상 (고령투자자)
재산상황	월 소득 중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300 만원 초과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경험	투자, 어디까지 해봤어요?	예적금만 해봤어요
		펀드나 주식은 해봤어요
		웬만한 투자는 다 해봤어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주식, 펀드에 대해 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매수와 매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해하고 있어요
		PER 과 PBR 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거래목적	투자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요?	원금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해요
		원금도 소중하지만 수익이 더 중요해요.
		손실위험이 있어도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위험에 대한 태도	손실이 있다면 어디까지 괜찮아요?	손실은 절대 안돼요
		-10%까지는 괜찮아요
		-20%까지는 괜찮아요
		큰 손실도 괜찮아요
현재 투자자산에 대한 기간 (투자예정기간)	투자하는 돈이 언제 필요한가요?	1 년 이내
		2 년 이내
		3 년 이내
		3 년 이후

[별표 2]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 <개정 2023. 12. 08.>

■ 문항별 배점

구분	질문	답변	점수
연령	(고객정보 자동 입력)	29 세 이하	3
		30 세 이상 39 세 이하	2.5
		40 세 이상 49 세 이하	2
		50 세 이상 59 세 이하	1.5
		60 세 이상 64 세 이하	1
		65 세 이상 (고령투자자)	0.5
재산상황	월 소득 중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 만원 이하	1
		200 만원 이하	2
		300 만원 이하	3
		300 만원 초과	4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경험	투자, 어디까지 해봤어요?	예적금만 해봤어요	1
		펀드나 주식은 해봤어요	3.5
		웬만한 투자는 다 해봤어요	7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주식, 펀드에 대해 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0.5
		매수와 매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1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해하고 있어요	3.5
		PER 과 PBR 을 설명할 수 있어요	7
거래목적	투자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요?	원금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해요	1
		원금도 소중하지만 수익이 더 중요해요.	3
		손실위험이 있어도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5
위험에 대한 태도	손실이 있다면 어디까지 괜찮아요?	손실은 절대 안돼요	0.5
		-10%까지는 괜찮아요	5
		-20%까지는 괜찮아요	7
		큰 손실도 괜찮아요	10
현재 투자자산에 대한 기간 (투자예정기간)	투자하는 돈이 언제 필요한가요?	1 년 이내	1
		2 년 이내	2
		3 년 이내	3
		3 년 이후	4

■ 점수 계산방법

각 항목별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고(최고 40 점), 이를 100 점으로 환산. 단, 『위험에 대한 태도』 관련 답변이 "손실은 절대 안돼요"인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투자성향을 "안정형"으로 분류

※ (예시) 합산 34 점인 경우 → $34 \text{ 점} / 40 \text{ 점} \times 100 = 85 \text{ 점}$

■ 투자성향 부여

투자성향	환산점수 구간	투자성향 설명
공격투자형	81 점 이상	인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높은 수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당신의 가슴속엔 야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적극투자형	81 점 미만 68 점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높은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위험중립형	68 점 미만 55 점 이상	예적금은 너무 지루해요. 예적금 보다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더 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라면 약간의 손실은 감수해야죠.
안정추구형	55 점 미만 43 점 이상	손실위험 굳이 감수해야하나요? 예적금 이자나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소득이라면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안정형	43 점 미만	먼 곳을 바라보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게 나의 강점! 하지만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걸 좋아합니다.

[별표 3]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

■ 설정 3 년이상 펀드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97.5% VaR*	60%초과	60%이하	4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결산일 기준 직전 3 년 일간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를 곱해 산출

■ 설정 3 년미만 펀드

구분	분류기준
1 등급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별표 4]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펀드 기준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펀드 기준

펀드위험등급 고객투자성향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공격투자형	○	○	○	○	○	○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	○	○	○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	○	○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	○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

[별표 5] 펀드 투자위험 지도

펀드 투자위험 지도

상품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투자성향등급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97.5% VaR (설정 3 년이상 펀드)	60%초과	60%이하	4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펀드유형 예시	레버리지 원금보존형 ETF 등	파생형, 주식형 등	주식형, 주식 혼합형 등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채권형, 채권 혼합형 등	채권형 MMF 등

[별표 6] 고령투자자 펀드판매 보호 기준

고령투자자 펀드판매 보호 기준

제 1 조 (목적) 이 보호 기준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판매 시 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고령투자자란" 만 65 세 이상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그 중 만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 3 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사모펀드, 폐쇄형 상품 및 법시행령 제 3 조의 3 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제 4 조 (상품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 분석)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판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조 (숙려제도) 만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만 80 세 이상 초고령자에게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투자권유를 자제하여야 한다.